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건번호      제2019 - 41 - 226호

안 건 명    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    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표이사

의 결 일      2019. 8. 23.

### 주       문

1.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· 도난 · 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'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', '유출등이 발생한 시점', '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',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', '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'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·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
2.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3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

- 가. 금액 : 13,000,000원
- 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-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- 라.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, 제52조,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

## 이유

### I. 기초 사실

(이하 '피심인'이라 한다)은 영리를 목적으로 스키 및 스킨스쿠버용품 판매 사이트(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를 운영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통신망법'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,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| 대표자 | 설립일자 | 자본금 | 주요서비스 | 종업원 수 |
|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    |      |     |       |       |

#### <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평균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매출액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|

※ 자료 출처 :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

### II. 사실조사 결과

## 1. 조사 대상

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를 현장조사(2019. 1. 10.)하였고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2. 행위 사실

### 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스키 및 스킨스쿠버 용품 판매 사이트( )를 운영하면서 2019. 1. 10. 기준으로 건의 회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.

<참고 1>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

| 구 분  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집일 | 건수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
| 유료회원 | 이름,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메일, 휴대전화번호, 주소 |     |    |
| 휴면회원 | 상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

### 나.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경로

#### (1) 개인정보 유출규모

피심인이 스키 및 스킨스쿠버 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40건이 유출되었다.

<참고 2>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

| 구 分 | 유 출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 수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회원  | 아이디, 이름, 이메일, 휴대전화번호, 일반전화번호, 주소 | 40건 |

## (2) 유출 경로

미상의 해커가 2018. 7. 10. 23:34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관리자계정으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.

## (3) 유출 인지 및 대응

피침인은 2018. 7. 20. 피침인의 쇼핑몰 제작사인 문의게시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았지만 2019. 1. 10. 현장조사 시까지 유출사실을 신고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. 로부터 1:1

### 3. 개인정보의 기술적 · 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

#### 가.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

피침인은 2018. 7. 20.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나, 현장조사 시까지 유출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,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# 나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방송통신위원회는 2019. 2. 26. '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(안)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침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침인은 2019. 3. 7.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III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

가.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‘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(제1호)’, ‘유출등이 발생한 시점(제2호)’, ‘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(제3호)’,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(제4호)’, ‘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(제5호)’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·서면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2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·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·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·신고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‘정보통신망법 해설서’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의 ‘지체 없이’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, 관련 판례에서는 ‘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’로 해석하고 있다.

나.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“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,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,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##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지연(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)한 행위

피침인이 2018. 7. 20.로부터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나, 현장조사 시까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(i-privacy.kr)에 유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,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개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 < 피침인의 위반사항 >

| 사업자 명 | 위반 내용    | 법령 근거   |         |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|
|       |          | 법률      | 시행령     | 세부내용(고시 등)   |
|       | 지연<br>신고 | §27조의3① | §14조의2① |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한 행위 |

## IV. 시정조치 명령

### 1. 시정명령

피침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· 도난 · 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자체 없이 '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', '유출등이 발생한 시점', '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',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', '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'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·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2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



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)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[별표9] 및 「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」(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정보통신망법 시행령 [별표 9]와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,000만원을 적용한다.

#### <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>

| 위반사항  | 근거법령               | 위반 횟수별<br>과태료 금액(만원) |       |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|                    | 1회                   | 2회    | 3회 이상 |
| 하. 법 제27조의3제1항(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·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| 법 제76조<br>제1항제2호의3 | 1,000                | 2,000 | 3,000 |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- 1) (과태료의 가중)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▲증거인멸, 조작, 허위의 정보

제공 등 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피신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한다.

#### < 과태료 부과지침 [별표2] '과태료의 가중기준' >

| 기준        | 가중사유  | 가중비율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위반의<br>정도 | 나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  | 기준금액의<br>30% 이내 |
|           | 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 제2호 하록<br>가.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<br>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한 경우<br>나.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<br>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|                 |

2) (과태료의 감경)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▲당사자 환경, ▲사업규모와 자금사정, ▲개인(위치)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피신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.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이에 따라 피신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,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

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| 위반조문   | 기준금액    | 가중    | 감경 | 최종 과태료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|
| §27의3① | 1,000만원 | 300만원 | 없음 | 1,300만원 |

## V. 결론

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(시정명령)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(과태료)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

2019년 8월 23일

위 원 장      이 효 성



부위원장      김석진



위      원      허      육



위      원      표      철      수



위      원      고      삼      석

